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을 통한 FTA 활용 연구 - 인증수출자제도를 중심으로

2021. 12.

강동익 · 김다람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을 통한 FTA 활용 연구 - 인증수출자제도를 중심으로

2021. 12.

강동익 · 김다람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 동 익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다 량 특수전문직 3급(관세사)

목 차

I. 서론	1
II.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종류	4
1. 원산지의 개념과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국제협약	4
가. 원산지의 개념	4
나.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국제협약	5
2. 원산지 증명방식의 종류	12
가. 기관발급제도	14
나. 자율발급제도	14
3. 원산지 증명방식의 국제적 추세	18
가. 연도별 원산지 증명방식별 비교	18
나. 원산지 증명방식별 비교	19
다. 원산지 증명지역별 비교	20
III. 주요국의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현황	23
1. 우리나라	23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23
나. 인증수출자의 종류	24
다. 인증절차 및 요건	25
라. 인증수출자의 혜택	30
2. EU	32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32

나. 인증절차 및 요건	34
다. 인증수출자의 혜택	40
3. 중국	40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40
나. 인증절차 및 요건	42
다. 인증수출자의 혜택	44
4. 일본	45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45
나. 인증절차 및 요건	46
다. 인증수출자의 혜택	52
IV.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53
1. 국제비교	53
2. 문제제기	59
가. 다양한 FTA와 통일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방식	59
나. RCEP 발효와 인증수출자제도	62
3. 개선방안	63
가. 인증수출자 신청요건 등 개선	63
나.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65
참고문헌	71

표 차례

〈표 III-1〉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비교	29
〈표 III-2〉 우리나라 FTA별 적용 중인 인증수출자 혜택 비교	31
〈표 III-3〉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EU의 RTA	33
〈표 III-4〉 기관발급만을 규정한 중국의 FTA	41
〈표 III-5〉 기관발급만을 규정한 일본의 EPA	46
〈표 IV-1〉 주요국의 인증수출자제도 비교	56
〈표 IV-2〉 우리나라 체결 FTA의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60

그림 차례

[그림 II-1] 중개무역 구조와 원산지 증명서 인정 요건	10
[그림 II-2] FTA별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비교	18
[그림 II-3] FTA별 자율발급제도 종류별 비교	19
[그림 II-4]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율	20
[그림 II-5] 지역별 원산지증명제도 비교	22
[그림 IV-1] RCEP 대상 국가 FTA 수출활용률	66
[그림 IV-2] FTA 예산 및 중소기업 지원활동	67
[그림 IV-3] 지역별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68
[그림 IV-4] 연도별 인증수출자 누적취득 현황	69
[그림 IV-5] 총 수출기업 및 특혜지역별 인증수출자 비중	70

I. 서론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시작으로 미국, EU 및 중국 등 거대경제권은 물론 자원부국과 전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2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¹⁾이 발효되었음
- RCEP 발효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58개국과 다양한 형태로 체결한 18개의 FTA가 현재 시행 중이며,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FTA에 따른 무역 비중은 약 80%에 달함

- 그러나 다양한 FTA와 통일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방식²⁾은 FTA 활용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체결된 FTA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관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수출기업은 2021년 6월 기준 전체 수출기업 중 16%에 불과함³⁾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FTA 활용지원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저조함⁴⁾
- 정부기관의 경우 FTA별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등 FTA 활용의 복잡성이 심화됨

1)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임

2) 원산지 증명방식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주체로 구분되며, 수출국 관할당국이 관여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으로 나뉨

3) 2021년 6월 기준 87,459개의 총 수출기업 중 13,576개의 수출기업만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함

4)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임. 2021년 6월 기준 전체 FTA에 대한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76%이며 중소기업은 62%임

- 우리나라는 협상국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원산지 증명방식을 맞추어 준 결과로 다양한 원산지 증명방식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EU, 및 아세안⁵⁾과 아프리카의 경우 각각의 통일된 원산지 증명방식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원산지 증명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RCEP의 원산지 증명방식이 자율발급 방식 중 하나인 인증수출자제도가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율발급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⁶⁾
 - RCEP 협정국 중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원산지 증명방식의 특징은 기관발급이나, 이들은 EU와의 FTA를 통해 인증수출자제도를 수용하여 법적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다른 자율발급제도보다 인증수출자제도를 용이하게 사용할 것임
 - WCO(2020)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방식의 국제적 추세는 자율발급이며, 특히 인증수출자제도를 선택한 FTA는 전체 FTA 중 약 40%를 차지해 비중이 큰 편임⁷⁾
- 따라서 RCEP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인 자율발급 제도 중 인증수출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국으로 EU, 중국 및 일본을 선정해 이를 국제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⁸⁾
 - EU는 인증수출자제도를 최초 도입한 지역 간 협정(inter-regional agreements)으로서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중국은 2021년 11월경 인증수출자 관리방법에 대한 해관총서령을 공포한 바 있어 최신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RCEP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과 처음 FTA를 맺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의미가 있음

5) 아세안(ASEAN)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으로 이루어진 거대경제권으로 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에 의해 창설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임

6) RCEP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자기반 원산지 신고서 도입을 5년 이내 검토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아세안과 중국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허용되는 것에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도 추가 허용됨

7) WCO, "Comparative Study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20. 6., p. 18.

8) 미국은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FTA가 없으며 국내 규정으로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 I 장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먼저 원산지 증명방식의 개념, 발급 주체 및 절차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와 2018년 공표된 WCO의 「원산지 증명서 지침」을 살펴보고, 이후 원산지 증명서의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의 개념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고찰함
 - 원산지 증명의 방식별, 연도별 및 지역별 구분하여 원산지 증명방식의 국제적 추세를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으로 EU, 중국 및 일본을 선정하여 이들의 인증 수출자제도 운영 현황과 법적 체계에 대해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조사된 정보들을 토대로 국제 비교를 하고, 쟁점사항들을 정리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종류

1. 원산지의 개념과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국제협약

가. 원산지의 개념⁹⁾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의미하며,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포함함
 - 지역이란,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이나 국경선 밖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같은 독립적인 국가가 아닌 지역을 말하며, 별도의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음

- 동식물은 출생 또는 성장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농수산물에는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그리고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함
 - 원산지의 개념에서 물품의 생산이란 제조, 가공, 재배, 채취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표현하는 여러 용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생산단계가 끝난 이후의 단순 결합이나 소매포장 등은 대체로 생산의 개념에서 제외됨

- 완전생산품인 천연상품, 광물, 동물 또는 식물류의 상품은 원산지 결정에 어려움이 적으나, 두 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 또는 가공이 이뤄지는 동물 또는 식물류의 2차 상품이나 국제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공산품 등은 원산지 결정에 종종 어려움을 겪음

9) 진병진·김세라·황정훈, 『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12., p. 5.

나.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국제협약

- 원산지 증명에 대해 규정한 국제협약은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RKC)¹⁰⁾의 「특정부속서 K의 2장」과 WCO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지침」이 있음
- WTO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다만 원산지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WTO 「원산지 규정 협정」¹¹⁾에 기술되어 있음

1) 개정교토협약

-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RKC)의 「특정부속서 K의 2장」에서는 “원산지 증빙서류(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라는 용어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하고 있음¹²⁾
- 원산지 증빙서류는 원산지 증명서(a certificate of origin), 인증된 원산지 신고서(a certified declaration of origin) 또는 원산지 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 등으로 이루어짐
 - 원산지 증명서(a certificate of origin)는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양식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증명서와 관련된 상품이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또한 이 증명서는 제조업체, 생산자, 공급자, 수출업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 인증된 원산지 신고서(a certified declaration of origin)는 권한 있는 자 또는 기관에 의해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된 경우 그 특정 양식을 의미함

10)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Int’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s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 정식 명칭으로, 1974년 발효되었으며 관세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부속서들을 갖고 있으며 어느 부속서를 수록할지는 회원국 스스로 결정함. 협약 관리는 WCO에서 담당함

11) Paragraph 2, Article 1 of “the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2-roo_e.htm, 검색일자: 2021. 12. 22.

12) WCO, “Comparative Study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20. 6., p. 5.

- 원산지 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는 제조업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업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가 상업 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기타 문서에 수출과 관련하여 생산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적절한 문구를 의미함

- 적절한 세관 목적에 의해 필요한 서류만을 요구¹³⁾하는 현대의 세관행정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에 요구됨¹⁴⁾
 - 특혜관세 적용의 경우
 - 일방적·양자 간 또는 다자간 합의에 따라 채택된 경제·무역 조치 또는 보건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채택된 조치에 따르는 경우
 - 수입국 세관에서 허위 원산지로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세계관세기구(WCO)¹⁵⁾

- WCO는 원산지 증명 지침서 발간 목적에 대해 회원국들에 원산지 증명 관련 절차의 설계, 개발 및 관리 등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밝힘
 - WTO 「원산지 규정 협정」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정교토협약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최근 수십 년 동안의 FTA 증가와 이러한 협정에 포함된 다양한 원산지 증명 관련 요구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각각의 FTA와 GSP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 증명 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해 통일되지 않음
- 이하에서는 WCO 원산지 증명 지침서 내용 중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13)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3장 제3~16절

14) 개정교토협약 특정부속서 K의 2장 2절 및 5절

15) WCO, "Guidelines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18. 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용어 정의

- 원산지 증명방식(certification of origin)이란,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을 제시해 상품의 원산지 상태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란, 상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소명 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 또는 진술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를 포함함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서류상 또는 전자적으로 증명서와 관련된 상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임을 관할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특정 양식을 의미함
 -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self-certificate of origin)란, 생산자, 제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증명서와 관련된 상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간주됨을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특정 양식을 의미함
 - 원산지 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란, 상품과 관련된 상업 송장 또는 기타 문서에 생산자, 제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상태에 대한 진술서를 의미함
-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방식(self-certification of origin)이란, 원산지 신고서(a declaration of origin) 또는 자율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상품의 원산지 증명 또는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함
-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origin)란, 원산지명 또는 해당 코드를 세관신고서 또는 물품과 관련된 기타 문서에 표시하는 간단한 표식을 의미함

나)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를 받은 관할 당국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검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산시설 방문이 포함될 수 있음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산지 증명서 유형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기관에 의해 보증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급비용이 발생하고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 관할당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장점은 관할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확인했다면 원산지 증명서의 품질이 보장된다고 간주된다는 점인데, 원산지 증명서는 신뢰할 수 있는 주무기관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한편, 원산지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비용이 발생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및 관할당국의 검증에 시간이 소요됨
- 특히 FTA의 증가와 전 세계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관할당국의 역량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경우 관할 당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가 그 장점을 유지하고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방식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II.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 종류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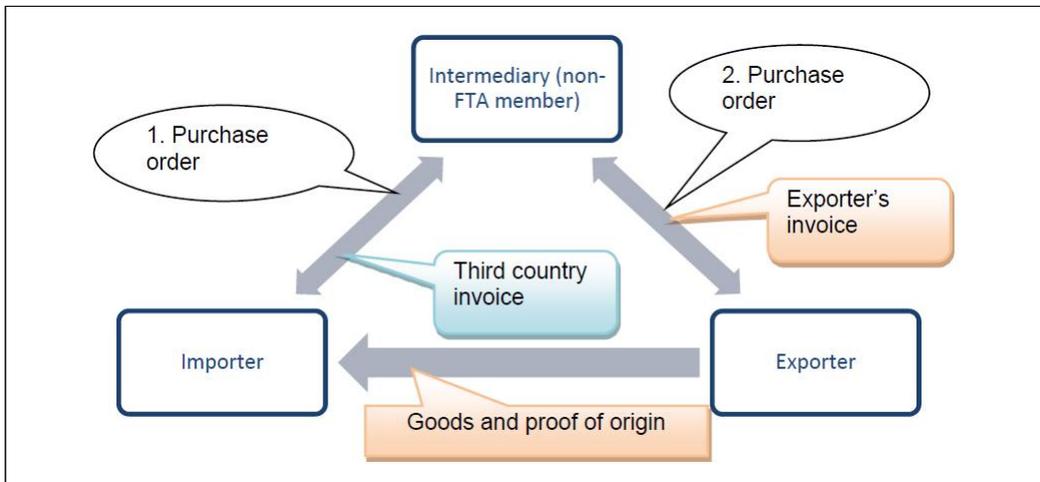
- 수출국 관할당국은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적절히 검토해야 함
 - 원재료의 HS 코드, 부가가치율의 계산 및 해당 물품의 특정 생산 공정 등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생산자,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 확인을 위해 생산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
- 수출국 관할 당국은 해당 법령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사용된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

다)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 WCO는 개정교토협약에서 세관 목적에 필요한 요건만을 준수하면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율발급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수출자는 최종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인 원산지 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를 생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획득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음
 - 생산자 또는 제조자가 해당 FTA에 따라 자율발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생산자 또는 제조자와 동등하게 자율발급할 수 있음
- 해당 FTA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수입자로서 수입신고와 특혜관세 청구 시 원산지 신고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원산지 증명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간주됨
 - 이 경우 수입자와 무역거래 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제3국 송장이 사용되는 중개무역의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proof of origin)와 제3국 송장에 언급된 상품이 서로 일치하고 상품이 해당 FTA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해야 함
- FTA 당사국인 수출국에서 상품이 선적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급하거나 또는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것이어야 함

[그림 II-1] 중개무역 구조와 원산지 증명서 인정 요건



자료: WCO(2020), p. 12

라) 원산지 증명방식 관련 관계자 및 의무

- 무역거래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특히 필요한 관계자들은 수출입국 세관, 수입자 및 수출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입국 세관은 국경에서 특정 무역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세관은 수출에 적용할 수 있는 무역 수단이 있는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수입자는 적절한 수입신고 처리를 위한 세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므로, 수입국 세관의 특혜관세 적용이나 비특혜 원산지 확인을 목적으로

-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수출자는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해야 하며,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자는 적용되는 증명방식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기관발급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되며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신고서는 생산자, 제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할 수 있음

 - 원산지 증명방식과 관계없이 상품의 원산지에는 관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요소를 구성하는 데다 특혜관세를 청구하는 것은 수입자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짐
 - 또한 수입자기반제도가 적용되는 FTA의 경우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대해 해당 상품의 원산지 상태를 입증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할 모든 책임을 가짐

 -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방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 기관발급의 경우 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수출자가 책임을 지며 다른 원산지 증명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최초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생기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된다면 수출자는 해당 사실을 관할 당국에 충실히 통보해야 함
 - 인증수출자제도에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신청서 내용과 원산지 신고서에 작성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과 해당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가짐
 - 인증 심사 단계에서 인증취득을 위해 관할 당국에 제출한 정보의 진위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가 달라짐
 - 완전수출자 기반 제도에서 수출자는 자율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류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원산지 사후검증의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자에게 원산지 검증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이 허용되며 수출자 또한 확인 요청에 충실히 응해야 함¹⁶⁾

- 세관 등 기관은 개별 FTA에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세부 요건과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자율발급제도 활용을 위한 세부절차와 요건 등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의 책임에 대해 공표해야 함
 -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방법으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율발급만이 허용된 인증수출자의 경우 관할 당국은 인증에 대한 세부절차, 요건 및 인증수출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개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생산자, 제조자, 수출자 및 수입자 모두가 자율발급제도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자율발급제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일부의 경우 대부분 수입국 관할 당국 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2. 원산지 증명방식의 종류

-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수입통관과정에서 원산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원산지 증명 제도라 함¹⁷⁾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FTA 체결 상대국 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임¹⁸⁾
 - 1970년대 초부터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제도에 기관 증명방식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도입되었고, 이후 많은 FTA가 체결

16) 원산지 간접검증의 유효성을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17) 안태건·김정환,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3호, 2018. 9., pp. 291~312; pp. 293~294.

18) WCO(2020), p. 16.

되면서 관할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산지 증명서가 되었음

- 그러나 특혜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원산지 관련 절차 축진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원산지 자율증명이 전면에 나타났고 현재 전 세계 FTA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증명이 도입됨

□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협정국의 세관이나 정부부처 혹은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을 기관발급제도, 관할당국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을 인증받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자율발급제도라 함

○ 자율발급은 또한 인증 수출자 또는 등록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제도와 완전 수출자 또는 수입자기반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제도로 나뉨

□ 원산지 증명방식은 지역별로 사용 추세가 상이한데, 유럽권과 미주권 국가들은 자율 발급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율발급제도로 전환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기관발급제도를 선호함

○ 자율발급제도는 FTA에서 결정된 방법에 따라 양국의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서명함

- 원산지 증명서의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우 상업송장에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문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발급 절차가 자율적이라 간소함

- 단, 허위작성과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에 대한 검증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검증 책임이 막중한 편임

○ 기관발급제도는 원산지국의 세관 또는 정부부처가 발행하며, 이들이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 기관발급제도는 자율발급제도의 원산지 증명서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¹⁹⁾가 있으나 발급 절차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19) 일부 견해로 기관의 실질적 확인이 없는 요식행위에 의한 증명의 성격을 띤다는 의견도 있음. 자료: 한상원,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 증명제도의 비교와 전망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pp. 167~190; p. 173.

가. 기관발급제도

- 원산지 증명서의 기관발급이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의 세관당국 또는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임²⁰⁾
 - 자율발급에 비해 공신력이 높아 허위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가능성이 낮은 것이 장점임
 - 단, 수출신고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행정절차가 중복된다는 점과 별도의 발급시간이 필요하고, 무역업체의 발급비용이 수반된다는 단점이 있음²¹⁾

나. 자율발급제도

-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이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 및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 발급하는 방법임²²⁾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허위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기에 사후적인 원산지 검증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²³⁾
- 자율발급제도의 종류로는 인증수출자제도, 등록수출자제도, 완전수출자기반제도 및 수입자기반제도로 나뉨

20) 관세청, 「원산지 증명서 개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검색일자: 2022. 1. 18.

21) 진병진·김세라·황정훈, 「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12., p. 7.

22) 관세청, 「원산지 증명서 개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검색일자: 2022. 1. 18.

23) 정재호·신상화,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p. 61.

1)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²⁴⁾

-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세관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 서류 간소화 혜택 등의 원산지 절차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²⁵⁾
 -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원산지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권한 있는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 정보는 대개 FTA 체약 당사국 간에 공유됨
 - 우리나라의 경우 RCEP는 공유되나 한-EU와 한-영 FTA는 공유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인증수출자제도는 기관발급 인증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 RCEP에 한해 두 가지 모두 허용됨

- 인증수출자제도는 지위 부여를 위한 세관당국의 사전 인증심사가 필요하므로, 다른 자율증명제도에 비해 일부 자유롭지 못한 절차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음

2) 등록수출자(registerer exporter)제도²⁶⁾

- 등록수출자제도는 EU의 일반특혜제도(GSP)와 일부 FTA에서 사용할 수 있는 EU가 도입한 인증제도임
 - EU는 등록수출자제도를 일반특혜제도(GSP)법 개정에서 처음 소개하였으며 신관세법(UCC), 위임규정과 이행규정, 그리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에도 도입하여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임²⁷⁾

24) WCO(2020), p. 14.

25) 관세청, 「인증수출자제도 개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검색일자: 2022. 1. 24.

26) WCO(2020), pp. 14~15.

27) 김중근·정은경, 「FTA 원산지 증명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2권 제2호, 2021. 5., pp. 103~126; p. 110.

- 등록수출자는 송장 혹은 수출물품을 식별하는 기타 상업문서에 특정 신고서를 작성 및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특혜원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음²⁸⁾
 - 등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진술서(statement on origin)를 직접 작성하고 발급함에 따라 원산지 자가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일부 특혜협정들은 원산지진술서를 원산지 신고서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함

- 등록수출자의 자격 요건은 매우 간단한데, 수출자는 자신의 관할 당국에 특정한 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면 됨
 - 등록 절차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나타낸 것일 뿐 등록 당시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

- 등록수출자제도의 대표 사례로 2019년 11월에 발효된 EU-싱가포르 FTA가 있음
 - EU 내 인증수출자 또는 싱가포르 등록수출자의 원산지 신고만이 유일한 원산지 증명이며 관할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EU에 따르면 EU에 등록수출자제도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수년 전 EU-싱가포르 FTA가 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3) 완전수출자기반제도 및 수입자기반제도²⁹⁾

- 완전수출자기반제도(Fully exporter-based system)란, 수출자 및 생산자의 책임하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임
 - 권한 있는 기관은 원산지 증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수출국 세관의 감독도 받지 않음
 - 개정 전 NAFTA 협정의 원산지 증명제도가 완전수출자기반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원산지 증명서에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됨

28) 상동

29) WCO(2020), pp. 15~16.

- 완전수출자기반제도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수입국 세관당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직접 원산지 검증을 진행할 수 있어, 사후 원산지 직접검증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입자기반제도(Importer-based system)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수입물 품에 대한 정보³⁰⁾를 바탕으로 원산지 신고서 작성과 단순한 원산지표시(indication of origin)를 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을 책임지는 제도로 가장 자유로운 원산지 증명 방식임
 - 자율발급제도 중 가장 자유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로 볼 수 있으며, 대개 미국에서 발효되는 FTA들이 수입자기반제도를 따름
 - 2020년 7월 1일 개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과거 NAFTA)이 완전수출자기반제도에서 수입자기반제도로 수정됨
 -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FTA에서 수입자기반제도를 도입한 협정은 2019년 2월에 발효된 EU-일본 FTA가 있음
 -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다 미국의 참여가 불발된 2018년 12월에 발효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또한 수입자기반제도를 도입함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를 근거로 할 것을 규정함³¹⁾
 - 또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품명·품목번호(HS 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항 및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기재·관리할 것을 규정함

30) 수입자는 상품의 제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출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제공한 문서나 정보에 기초함

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재인용: 김중근·정은경 (2021),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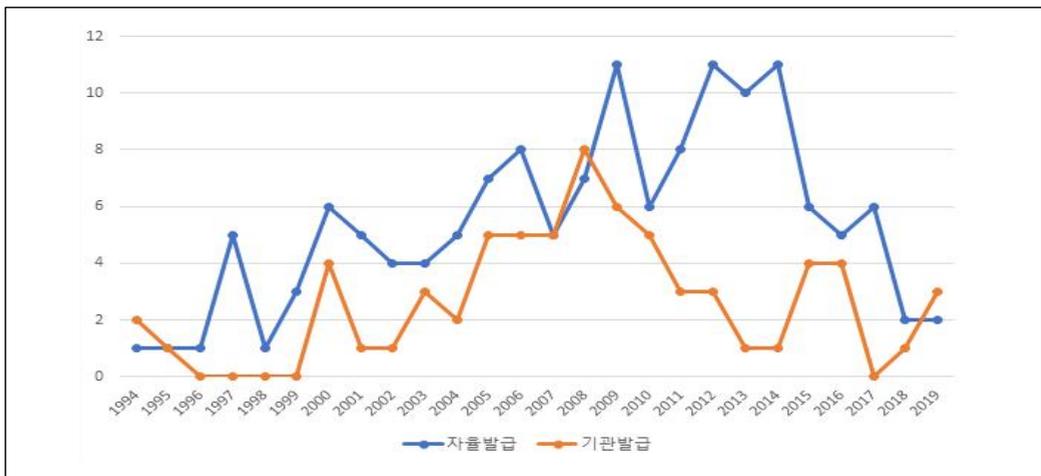
3. 원산지 증명방식의 국제적 추세

- WCO(2020)³²⁾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방식의 국제적 추세는 자율발급이나, 지역별로 자율발급의 종류와 기관발급의 선호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함
- WCO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발효된 FTA 중 209개³³⁾의 FTA 중 원산지 증명 관련 조항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였음

가. 연도별 원산지 증명방식별 비교

- 2000년대 중반부터 체결된 FTA는 자율발급제도를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발급제도와 자율발급제도의 채택률은 나란히 증가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자율발급제도의 채택률은 증가한 것에 반해 기관발급제도의 채택률은 점점 하락함

[그림 II-2] FTA별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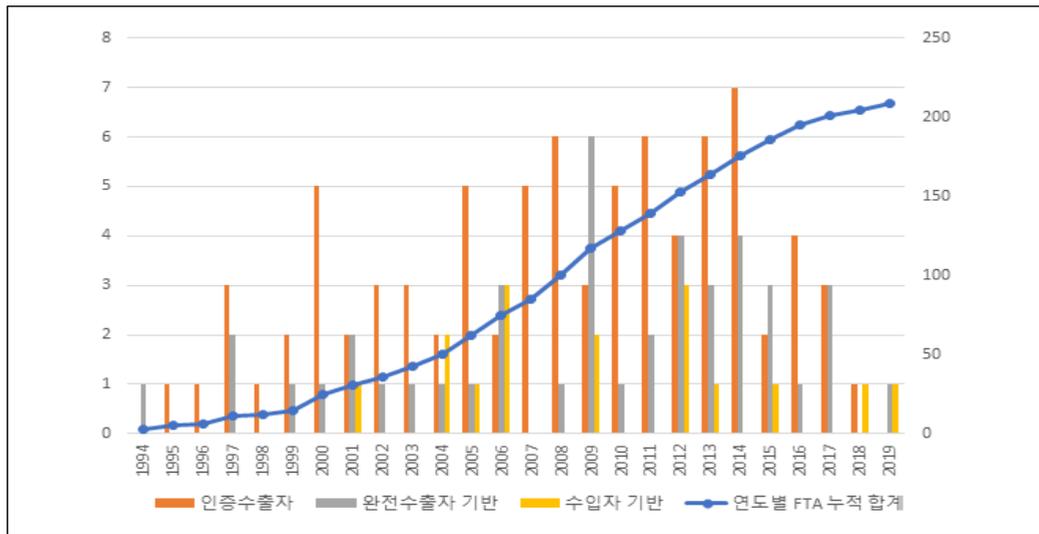


자료: WCO(2020), pp. 32~4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2) WCO, "Comparative Study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20. 6.
 33) WTO의 지역무역협정(RTA)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동 기간 중 285개의 지역무역협정(RTA)이 발효된 상태이며, WCO는 원산지 데이터베이스(Origin Database)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실제 발효되어 시행 중인 협정을 중심으로 재편함

- 자율발급제도 중 특히 인증수출자제도의 채택률이 높았음
 - 인증수출자제도를 채택한 FTA들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제도와 기관발급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한 요소로 규정함

[그림 II-3] FTA별 자율발급제도 종류별 비교



자료: WCO(2020), pp. 32~4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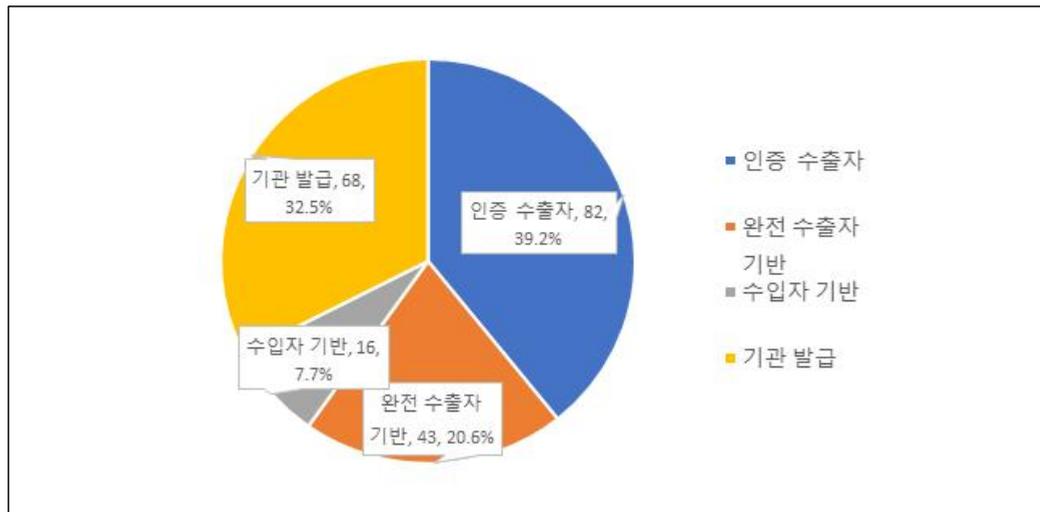
나. 원산지 증명방식별 비교³⁴⁾

- 연구 대상 FTA 중 141개(67.5%)는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하도록 규정함
 - 82개의 협정(39.2%)은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방식을 선택하면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59개의 협정(27.8%)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해 관할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43개의 협정(20.6%)은 완전수출자기반제도를, 16개 협정(7.7%)은 수입자기반 제도를 채택함

34) WCO(2020), pp. 17~18.

- 연구 대상 FTA 중 68건(32.5%)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만을 허용함³⁵⁾
 - 기관발급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세관당국, 통상부처 및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기관(상공회의소) 등이 있음

[그림 II-4]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율



자료: WCO(2020), p. 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원산지 증명지역별 비교

- 지역별로 주로 사용하는 원산지 증명방식이 상이한데, 크게 유럽, 미주,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으로 구분됨³⁶⁾
 - 인증 및 등록수출자제도는 주로 1개 이상의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FTA에 사용되며, 완전수출자 또는 수입자기반증명제도는 주로 미주 국가별 FTA에 활용됨
 -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35) 기관발급(68개)과 인증수출자제도 및 기관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FTA(82개)를 모두 합한 다면 기관발급을 채택한 FTA는 150개(72.3%)가 됨

36) WCO(2020), p. 12.

- 인증수출자제도는 주로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국가들이 활용하는 원산지 증명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인증수출자제도를 채택한 82개의 협정 중 72개 협정(88%)에서 EURO-MED 지역과 관련된 협정 지역별 원산지 증명방식을 채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³⁷⁾
 - 82개의 협정 중 48개의 협정이 EURO-MED 지역 내 국가들 간에 체결되었음
 - 31개의 지역 간 협정(inter-regional agreements)³⁸⁾ 중 24개의 협정이 하나 이상의 유럽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두고 있음

- 완전수출자기반제도는 일반적으로 미주 지역의 무역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3개 협정 중 29개 협정(66%)이 미주 국가를 포함하는 협정으로 간주됨³⁹⁾
 - 완전수출자기반제도를 규정한 43개의 협정 중 아메리카 대륙 내 국가 간 협정이 15개로 구성됨
 - 또한 21개의 지역 간 협정 중 14개의 협정이 하나 이상의 아메리카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두고 있음

- 수입자기반제도의 경우 과거 미국이 당사자인 FTA에서만 발견되었으나, 2020년 기준 209개 협정 중 16개 협정(7.7%)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CPTPP와 EU-일본 EPA를 포함한 9개 지역 간 협정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됨⁴⁰⁾
 - 아시아 내에서 체결된 두 가지 협정인 뉴질랜드-중국·대만 FTA(2013)와 일본-호주 EPA(2015)가 수입자기반제도를 도입함
 - 일본-호주 EPA(2015)는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도입함

37) WCO(2020), p. 18.

38) 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하며, 자유 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임.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9150&cid=50305&categoryId=50305>, 검색일자: 2022.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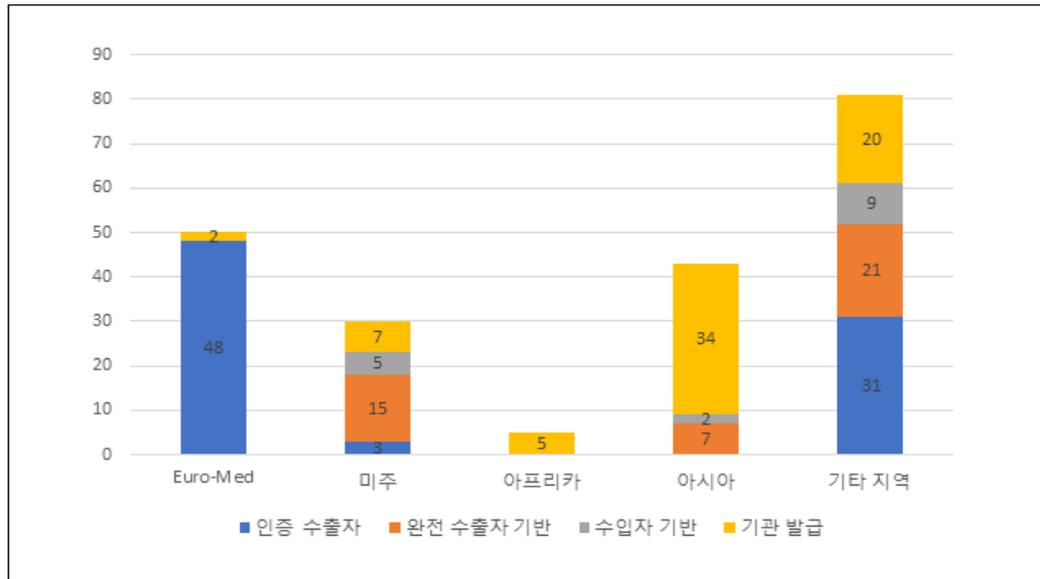
39) WCO(2020), p. 18.

40) WCO(2020), p. 19.

- 뉴질랜드-중국 타이베이 FTA(2013)에서는 수입국뿐만 아니라 생산국·수출국도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자⁴¹⁾도 서명할 수 있어 원산지 증명 측면에서 매우 유연하다고 볼 수 있음

- 기관발급제도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선호하는 증명제도로 보임
 - 아프리카 내 5개 협정은 모두 기관 증명만을 허용함
 - 아시아에서는 43개 아시아 내 협정 중 34개(79%)가 기관 증명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기관발급제도를 규정한 대부분의 지역 간 협정은 아시아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두고 있음

[그림 II-5] 지역별 원산지증명제도 비교



자료: WCO(2020), p. 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1) 권한 있는 자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브로커·화물 운송업자(또한 상공회의소)가 서명할 수 있음

Ⅲ. 주요국의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 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자율 증명을 인증하는 제도임⁴²⁾
-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우리나라 법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⁴³⁾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8조(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4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 제12조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7조

43) 「FTA관세특례법」은 양자 간 관세협정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고 법제화한 것이며, 원산지 규정 간 서로 상충하는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개별 FTA를 우선 적용해야 함. FTA별 상세 내용은 개별 협정문을 참고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 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18개의 FTA 중 한-EU, 한-영 및 RCEP가 인증수출자를 규정함
 - 인증수출자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FTA로는 한-EFTA,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및 한-베트남 등이 있음

나. 인증수출자의 종류⁴⁴⁾

- 인증수출자는 인증 요건에 따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최근 2년간의 원산지 분야 범규준수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양자 간 가장 큰 차이점임⁴⁵⁾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함
 -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할 당국 원산지 관련 조사 또는 체약 상대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44)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7조

45) 진병진,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0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9. 12., pp. 191~208; p. 195.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함
 -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일 것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다. 인증절차 및 요건

- (신청자 범위) 계약 상대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 또는 수출예정자는 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사 등에게 인증신청 업무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음⁴⁶⁾

1) 업체별 인증수출자⁴⁷⁾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HS 6단위)의 원산지소명서⁴⁸⁾
 - 단,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 보유자는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 소명서에 갈음할 수 있음
 -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 원산지 증명 작성대장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내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46)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관세청고시」 제4조

47)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48)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인 경우 원산지 소명서와 입증자료 대신 국내 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거나 인증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정기간은 신청서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함
- 업체별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변호사, 관세사 및 공인회계사
 - 해당 업체 소속직원으로서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2) 품목별 인증수출자⁴⁹⁾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49)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HS 6단위)별 원산지소명서
 - 단,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있음
 -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인 경우 원산지 소명서와 입증자료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단, 인증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함

3) 인증수출자제도 공통규정

- (유효기간)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처음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해야 함
-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인증수출자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 지체 없이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함
 -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원산지 서면조사 또는 체약 상대국 요청에 따른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 (서류보관기간)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기간은 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임⁵⁰⁾
 - 단, 한-중 FTA와 RCEP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3년임

- (사후관리) 인증요건 유지와 관련한 사후관리는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과 세관의 사후관리로 구분됨⁵¹⁾
 - 인증수출자는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음
 - 자율점검 1회차의 경우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
 - 자율점검 2회차의 경우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
 - 세관장은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필요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점검을 할 수 있음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수출자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해야 함
 -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시정요청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함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수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수출자와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함

50)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51)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7조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원산지 서면조사 또는 체약 상대국 요청에 따른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발급한 경우
 -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신규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함
- 세관장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기타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주요 내용의 비교를 <표 Ⅲ-1>로 정리함

<표 Ⅲ-1>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비교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 증명 능력 보유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서류보관의무 위반 및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 사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HS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물품
인증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품목별 인증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¹⁾

〈표 III-1〉의 계속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 상대국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관리능력

주: 1)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자료: 관세청, 「인증수출자제도 개요」, <https://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및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https://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 검색일자: 2022. 2. 3.

라. 인증수출자의 혜택

- 인증수출자의 공통적인 혜택은 인증수출자가 적용되는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해 수출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며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혜택 차이는 인증범위에 따라 상이함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적용되는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임
 -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과 신규 수출 및 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과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이 부여됨
 - 인증받은 협정 외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인증수출자제도가 적용 중인 FTA별로 인증 전후 혜택을 〈표 III-2〉로 정리함
 - 한-EU와 한-영 FTA는 6천유로 이하의 소액수출 또는 샘플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번호 없이 일반 수출자도 원산지 증명서 자율작성이 가능하나, 6천유로 초과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한-EFTA의 경우 수출금액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수출자는 원본 원산지 증명서에 수출자 서명이 필수이고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과 전자서류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임
- 기존에 기관발급으로 운영되던 아세안 등 FTA들은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르는 첨부서류와 현지 확인 등이 생략됨

〈표 Ⅲ-2〉 우리나라 FTA별 적용 중인 인증수출자 혜택 비교

구분	인증 전	인증 후
한-EU 한-영	- 6천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의 경우 일반 수출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에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RCEP	-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페루 ¹⁾	- 원산지상품을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탁송화물로서 총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 상품가격과 상관없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기타 FTA	인증수출자제도 미적용	

주: 1) 2016년 8월 1일부터 수출금액 및 인증수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자율발급 가능
 자료: 관세청,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https://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 검색일자: 2022. 2. 3.

2. EU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AE)제도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 물품 거래자가 수출물품의 송장 또는 다른 상업문서에 특정 원산지 신고문언을 포함하여 특혜 원산지를 직접 인증해 수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임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후 인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의 모든 수출물품에 원산지 자율증명이 적용됨

- 2016년 6월 1일, 신관세법(UCC, (EU) 952/2013)의 등장으로 인증수출자제도와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던 법령들이 일부 통합되면서 기존 법령들⁵²⁾은 폐지되었으며 최근의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EU의 법령들은 다음과 같음
 - 「관세법 시행령(EU) 2015/2447」
 - 「범유럽-지중해 의정서((EU) 2013/94)」와 해당 법령의 해설서
 - EU의 인증수출자제도 가이드라인(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 기타 각 EU 회원국 규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와 관련된 세부 절차⁵³⁾

-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RTA) 중 80% 이상이 인증수출자를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WCO 자료와 WTO의 2021년도까지 EU가 추가로 체결한 FTA를 합치면 총 38개이며, 이 중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RTA는 총 32개임⁵⁴⁾
 -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RTA는 <표 III-3>과 같음

52)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EU의 구 법령들은 「유럽공동체 관세법(CCC, (EU) 2913/92)」, 「관세법 시행령(EU) 2454/93」, 인증수출자 허가와 관련된 규정 (EU) 1207/2001 등이 있었음

53) EC, "Approved exporter,"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2. 2. 8.

54) WTO의 2021년 기준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59개이나 WCO의 원산지 데이터베이스(Origin Database)와 교차 검증하고 실제 발효되어 시행 중인 협정을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 총 38개로 집계됨

- 기관발급을 규정한 RTA는 Eurasian Economic Union(EAEU)-베트남과 EAEU-이란이며, 완전수출자 기반 RTA는 EU-캐나다, EU-싱가포르, 그리고 수입자 기반 RTA는 EU-일본과 EU-영국임

〈표 Ⅲ-3〉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EU의 RTA

구분	RTA	발효일자	규정
1	EU-터키	1996-01-01	Art. 14, 15, 19(1)
2	EU-페로스제도	1997-01-01	Art. 16, 17, 22(1)
3	EU-팔레스타인	1997-07-01	Art. 16, 17, 22(1)
4	EU-튀니지	1998-03-01	Art. 17, 18, 22
5	EU-남아프리카	2000-01-01	Art. 14, 15, 19(1)
6	EU-모로코	2000-03-01	Art. 16, 17, 21(1)
7	EU-이스라엘	2000-06-01	Art. 17, 18, 22(1)
8	EU-멕시코	2000-07-01	Art. 15, 16, 20(1)
9	EU-북마케도니아	2001-01-01	Art. 16, 17, 21(1)
10	EU-요르단	2002-05-01	Art. 16, 17, 21(1)
11	EU-칠레	2003-02-01	Art. 15, 16, 20(1)
12	EU-레바논	2003-03-01	Art. 16, 17, 21(1)
13	EU-이집트	2004-06-01	Art. 16, 17, 22(1)
14	EU-알제리	2005-09-01	Art. 16, 17, 22(1)
15	EU-알바니아	2006-12-01	Art. 16, 17, 22(1)
16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2006	2007-05-01	Art. 16, 17, 22(1)
17	EU-몬테네그로	2008-01-01	Art. 16, 17, 22(1)
18	EU-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08-07-01	Art. 16, 17, 22(1)
19	EU-캘리포니아주 EPA	2008-12-29	Art. 16, 17, 22(1)
20	EU-파푸아뉴기니, 피지(Pacific States)	2009-12-29	Art. 15, 16, 20(1)
21	EU-세르비아	2010-02-01	Art. 16, 17, 22(1)
22	EU-대한민국	2011-07-01	Art. 15, 16, 17
23	EU-콜롬비아와 페루	2013-03-01	Art. 15, 16, 20
24	EU-중앙아메리카	2013-08-01	Art. 14, 15, 19
25	EU-우크라이나	2014-04-23	Art. 20, 22, 23
26	EU-카메룬	2014-08-04	Art. 14,15,19
27	EU-조지아	2014-09-01	Art. 15,16,21
28	EU-몰도바	2014-09-01	Art. 15,16,21
29	EU-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2016-09-03	Art. 17,18,22
30	EU-남아프리카 개발 연합(SADC)	2016-10-10	Art. 19,20,24
31	EU-가나	2016-12-15	Art. 17,18,22
32	EU-베트남	2020-08-01	Art. 13,15,19, Annex VI

자료: WCO(2020), WTO, "RTAs in force, including accession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EC, "Negotiations and agreements,"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_in-place, 검색일자: 2022. 3. 23.

나. 인증절차 및 요건^{55), 56), 57)}

- EU 내 세관영토에 설립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을 송장 신고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한 FTA 이용을 위해 인증수출자 지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대상) 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등 물품 거래자(trader) 여부와 관련 없이 수출계약 당사자 중 하나로서 EU 내 세관영토에서 수출하는 개인 또는 기업일 수 있음
 - 단, 통관 대리점(Customs clearance agents)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음
- (인증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음
 - EU에서 출고된 물품을 빈번하게 수출(frequent shipments)하는 자⁵⁸⁾
 - 한-EU FTA의 경우 송장 신고서에 작성된 원산지 신고문언이 유일한 원산지 증명서이며 수출의 빈도조건은 포함하지 않음⁵⁹⁾
 - 세관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guarantees)을 제공하는 자⁶⁰⁾

55) EUR-Lex,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제67조, 제77조 및 제120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R2447>, 검색일자: 2022. 2. 8.

56) EUR-Lex, “EXPLANATORY NOTES CONCERNING THE PAN-EURO-MEDITERRANEAN PROTOCOLS ON RULES OF ORIGIN(2007/C 83/01),” 제23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C_.2007.083.01.0001.01.ENG&toc=OJ:C:2007:083:TOC, 검색일자: 2022. 2. 7.

57)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2020, pp. 5~15,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ystem/files/2019-02/guidance-on-approved-exporters.pdf, 검색일자: 2022. 2. 3.

58) (EU) 2015/2477 제120조 1항

59) European Commission(2020), p. 4.

60) (EU) 2015/2477 제120조 1항

-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자로서 파산절차를 밟고 있거나 관세 및 세금 등을 체납하지 않을 것⁶¹⁾
 - EU와 특정 국가와의 협정 또는 지역 간 협정에서 채택한 원산지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⁶²⁾로서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함⁶³⁾
 - 신청자 또는 직원은 특혜원산지규정을 숙지함
 - 물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 세관당국이 요청 시 특혜 적용을 받을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개별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장(bookkeeping)을 작성함
 - 신청자가 인증수출자 지위와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의 국가인증을 보유한 경우 (AEO 업체 등) 심사 시 고려될 수 있음⁶⁴⁾
- (신청서류)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⁶⁵⁾
- 신청자 관련 정보
 - 법인명, 세관등록번호(Economic Operation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⁶⁶⁾ 법인 주소 및 원산지 증명서를 관리하는 시설 주소 등
 - 신청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직위 등
 - 신청인(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상업적인 활동 내역
 - 물품과 생산 관련 정보
 - 생산 장소 및 물품 보관주소
 - 수출 예정 물품(HS 4단위 기준)의 성질
 - 수출 예정 목적지 또는 국가

61) European Commission(2020), p. 7.

62) (EU) 2015/2477 제67조 3항

63) European Commission(2020), p. 4.

64) European Commission(2020), 3.3.1.4, p. 7.

65)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관할 세관 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 당국은 신청자에게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지위 취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

66) EU 지역 내 통관고유번호

- 인증수출자제도가 적용되는 각각의 FTA상 원산지규정의 이행으로 제조공정의 설명과 투입원재료의 HS 코드, 가격 및 원산지 정보 등
- 수출 관련 정보
 - 관세특혜를 받는 수출의 빈도성(빈도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FTA의 경우 제외)
 - 수출예정물품이 EU 회원국 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관세청과 관련 업체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장 주소 등
- 원산지관리조직에 관한 정보
 - 관세특혜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의 이름 및 원산지 신고서 서명을 담당하는 직원의 이름
 - 특혜 원산지거래를 구분하는 회계시스템(사용 중인 IT시스템 정보 포함)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처리방안(서류 종류 및 장부보관 시스템 등)
 - 관세면제조항과 양립할 경우에 대비한 역내가공에 대한 통관절차 사용방안 등
- 기타 필요 정보
 - 신청인의 서명 및 날짜
 - 인증수출자의 최초 신청 여부(연장 또는 수정 등)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인 경우 해당 번호
 - 원산지사전확인제도(BOI) 이용 여부
 - 원산지 신고서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서명 포기)이 있다면 해당 서면 계약서 제출
-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는 세관당국⁶⁷⁾은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신청자가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수출하는지 여부는 수출량이나 수출금액 등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청자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수출을 수행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함

67)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는 관할 회원국 내에서 중앙 집권화시키거나 분산시킬 수 있으며, 중앙집권화의 경우 회원국이 지정한 관할 기관이 부여하며 분산한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본사 소재지의 세관에 의해 부여됨

- 필요에 따라 현지심사 또는 세관에서 서면심사로 이뤄지며, 특히 생산자를 제외한 수출자 등 무역거래자는 회계시스템과 회사 내부조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⁶⁸⁾
 - 신청자가 수출할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evidence of origin)을 항상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
 - 수출자의 경우, 현재 원산지 규정을 알고 있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생산자의 경우, 해당 물품의 재고계정(stock account) 등을 통해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자 또는 수출자 등 거래자만을 상대하는 기업의 경우, 심사는 통상적인 거래 흐름에 보다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과거 수출 기록에 비추어 수출자가 물품의 원산지 상태와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충분한 보증(guarantees)을 제공하는지 여부
- (심사기간)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에 대한 심사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세관 당국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
- 원산지 증빙서류 또는 회계자료를 보유한 물품에 대해서만 송장 신고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것
 - 잘못된 원산지 문구 사용 또는 인증수출자 번호의 오용 등 인증수출자가 사용되는 모든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질 것
 -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송장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장될 것
 - 원산지 신고서 또는 송장 신고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동안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 세관당국이 요청할 때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현지 검사를 허용할 것

68) European Commission(2020). 3.3.1.5, p. 7.

-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특혜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는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sation number)를 부여해야 함
 - 세관인증번호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허가하는 EU 회원국의 ISO 국가코드를 따라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인증수출자의 특혜원산지 증명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세관당국의 주소를 제3국에 제공해야 함
- 해당 FTA에 송장 신고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 양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부속서 양식(Annex 22-09)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해당 FTA에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송장 신고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가격 기준은 각 적하물(consignment)당 6천유로로 함
- (유효기간)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기간은 제한적이거나 무제한적일 수 있음⁶⁹⁾
 -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면 수출자가 지위 부여 후 인증수출자제도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지위가 갱신될 수 있음
- (서류보관기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 개별 FTA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사후관리) 세관당국은 유효기간 중 수출물품이 관련 FTA에 따라 특혜원산지인지 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보유 여부 및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필요조건 준수 여부 등을 서면 감사 또는 현지감사 등으로 관리·감독해야 함
 - 수입국 관할당국의 원산지 직접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정기감사를 수행

69) European Commission(2020), 3.3.3, p. 8.

-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회원국 관할당국의 주도로 정기심사 및 위험분석 기준에 따른 심층감사를 수행
 -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원산지 물품의 유형, 산업부문 또는 목적지 및 국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심층감사의 빈도는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관당국은 사후관리 결과 인증수출자 지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경미한 경우 부적합 사항을 명시한 경고문 발송
 - 인증수출자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불일치한 경우 시정 조치
 - 각 회원국 법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 또는 기타 의무가 부여될 수 있음
 - 신관세법(UCC) 제28조 및 개별 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 활용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 자체가 무효 처리됨

- (인증취소) 세관당국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⁷⁰⁾
 - 세관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EU와 특정 국가와의 협정 또는 지역 간 협정에서 채택한 원산지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70) 원산지 누적 기준을 이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하는 인증수출자의 경우 지위 박탈 요건이 상기 두 가지 요건에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자료: (EU) 2015/2447 제77조 6항(c)

다. 인증수출자의 혜택⁷¹⁾

- 인증수출자는 관할당국에 EUR.1 또는 EUR-MED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산지 신고서 또는 송장 신고서에 세관인증번호를 작성함으로써 특혜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간소한 수출절차 혜택을 누림
- 일반적으로 송장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수기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하나, 인증수출자는 송장 신고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세관 당국에 자필 서명과 마찬가지로 본인을 식별하는 모든 송장 신고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3. 중국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 중국의 인증수출자(核准出口商)란,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증하고, 그에 따라 수출 또는 생산할 수 있으며, 관련 협정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함
- 중국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인증수출자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규범화하고자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FTA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54호」를 제정함⁷²⁾

71) EUR-Lex,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제119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R2447>, 검색일자: 2022. 2. 8.

72) 해관총서령 시행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해관총서 고시 제105호(海矣总署公告2021年第105号)」에 공표함

-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중-아이슬란드, 중-스위스, 중-모리셔스 및 RCEP 등이 인증수출자를 규정함
- 2019년 기준 WCO 자료와 WTO의 2022년 1월까지 중국이 추가로 체결한 FTA를 합하면 총 20개이며, 이 중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FTA는 총 4개임⁷³⁾
 - 중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10개의 FTA가 <표 Ⅲ-4>와 같이 기관발급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완전수출자기반제도를 규정한 FTA는 홍콩·중국-뉴질랜드, 홍콩·중국-EFTA, 홍콩·중국-칠레 및 중국-호주로 총 4개임

<표 Ⅲ-4> 기관발급만을 규정한 중국의 FTA

구분	FTA	발효일자	규정
1	중-아세안	2005-01-01	Annex 3 Rule 12
2	중-칠레	2006-10-01	Art. 30
3	중-파키스탄	2007-07-01	Art. 23
4	중-뉴질랜드	2008-10-01	Art. 33, 34
5	중-싱가포르	2009-01-01	Art. 27, 28
6	중-페루	2010-03-01	Art. 38
7	중-코스타리카	2011-08-01	Art. 37
8	중-대한민국	2015-12-20	Art. 3.15
9	중-조지아	2018-01-01	Art.3.14
10	홍콩·중국-조지아	2019-02-13	Art. 14

자료: WCO(2020); WTO, "RTAs in force, including accession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검색일자: 2022. 3. 23.

73) WTO의 2021년 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는 총 23개이나 WCO의 원산지 데이터베이스(Origin Database)와 교차 검증해 실제 발효되어 시행 중인 협정을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 총 19개로 집계됨

나. 인증절차 및 요건⁷⁴⁾

- (인증요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세관 고급인증기업(AEO)
 - 관련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것
 - 완벽하게 준비된 원산지 증빙서류관리제도를 수립할 것

- (신청서류)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직할세관(주관세관)에 서면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자 관련 정보로 기업 명칭, 주소, 통합 사회신용번호,⁷⁵⁾ 세관 신용등급, 기업 유형, 연락처 등
 - 물품 관련 정보로 주요 수출물품 명칭, 규격 및 모델, HS 번호, 적용할 FTA명 및 원산지 기준, 원재료와 부분품 구성내역 등
 - 관련 FTA하에서 원산지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승낙 서명서
 - 완벽하게 준비된 물품의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제도를 수립했다는 승낙 서명서
 - 원산지 증명서에 날인하고자 하는 인장(서명)
 - 신청서류 관련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서면형태의 비밀유지요구서
 -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

- (심사기간) 주관세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결정을 해야 함

74) 중국해관총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经核准出口商管理办法(海关总署第254号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인증수출자관리방법의공포예관한명령」(해관총서령 제254호. 2021. 11. 23.), 2021. 11. 23.,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4020565/index.html?ess%24ctr151088%24ListC_Info%24ctl00%24KEYWORDS=%E6%A0%B8%E5%87%86%E5%87%BA%E5%8F%A3, 검색일자: 2022. 2. 9.

75) 법인의 경우 영업집조, 세무등록증 및 기업코드를 합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자료: 차이나포커스, 「중국의 3증합1(三證合一) 행정변경업무」, 2017. 6. 1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8135429&memberNo=36206011>, 검색일자: 2022. 2. 10.

- 심사 후 인증수출자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주관세관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 인증수출자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불인증 결정서를 교부해야 함

- (유효기간) 인증수출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임

- (상대국 정보교환) 해관총서는 중국이 체결한 FTA 상대국과 인증수출자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함
 - 정보교환 항목은 인증수출자 번호, 인증수출자 기업 명칭과 주소, 인증수출자 인증 발효일자과 유효기간, 기타 FTA상 교환하도록 요구되는 기타 정보 등이 있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록 및 정보제출 의무) 인증수출자는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인증수출자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주관세관에 해당 물품의 명칭, HS 6단위번호, 적용할 FTA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적용 언어) 모든 자료는 중문과 영문을 동시에 적용해 작성되어야 함

- (서류보관기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 인증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생산자에게 물품의 원산지 상태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함

- (사후관리) 주관세관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물품, 원산지 증빙 서류 관리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함
 - FTA에 따라 계약 상대국에서 심사청구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관총서의 통일된 조직에서 심사를 진행함

-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계약 상대국에서 요청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물품의 심사청구를 주관 세관에 전달해야 함
- (인증취소) 주관세관은 인증수출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인증수출자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인증수출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인증수출자가 해관총서에서 정한 기업신용등급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주관세관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공해 인증수출자의 인증을 편취한 경우⁷⁶⁾
 -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매매한 경우
 - 인증수출자가 계약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및 관련 물품의 심사청구를 세관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해당 심사청구 내용이 엄중한 경우
 -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해관총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과 동시에 1년간 누적된 발행건수가 전년도 발행건수의 1%를 초과하며 관련 물품의 수출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업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 인증수출자 취소 사유 중 허위서류를 제출해 인증을 편취한 경우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매매한 경우에 대해 주관세관은 반드시 경고를 하고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다. 인증수출자의 혜택

- 중국의 인증수출자 혜택은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수출자 관리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상대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리가 편리해진다는 점 등으로 보임⁷⁷⁾

76) 이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은 원천적으로 무효임

4. 일본

가. 인증수출자 정의 및 법령

- 일본의 인증수출자(認定輸出者)란, 「원산지 증명법」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장관의 인정을 받은 수출자가 계약상대국에 수출 시 관세상의 특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 일본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제1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가 자율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2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라고 지칭함

-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일본 법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근거한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증명법」)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 제7조의11부터 제7조의13
 -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근거한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2조
 -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근거한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24조
 -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의거한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 신청 및 이용안내 지침서」

- 일본이 체결한 EPA에서 일-스위스, 일-페루, 일-멕시코 및 RCEP가 인증수출자를 규정함
 - 2019년 기준 WCO 자료와 WTO의 2022년 1월까지 일본이 추가로 체결한 EPA를 합치면 총 18개이며, 이 중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EPA는 총 4개임⁷⁸⁾

77) 중국은 인증수출자 혜택에 관해 법령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음

78) WTO의 2022년 1월 기준 일본이 체결한 EPA와 WCO의 원산지 데이터베이스(Origin Database)를 교차 검증해 실제 발효되어 시행 중인 협정을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가 총 18개로 동일함

- 일본의 60%에 해당하는 11개의 EPA가 <표 III-5>와 같이 기관발급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자기반제도를 규정한 EPA는 일-호주, 일-EU, 일-영국으로 총 3개이며 RCEP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수입자기반제도를 추가 규정함

〈표 III-5〉 기관발급만을 규정한 일본의 EPA

구분	EPA	발효일자	규정
1	일-싱가포르	2002-11-30	Art. 29, 31
2	일-말레이시아	2006-07-13	Art. 39, 40
3	일-칠레	2007-09-03	Art. 43, 44
4	일-태국	2007-11-01	Art. 39, 40
5	일-인도네시아	2008-07-01	Art. 40, 41
6	일-브루나이	2008-07-31	Art. 36, 37
7	일-아세안	2008-12-01	Annex 4 Rule 2, 3
8	일-필리핀	2008-12-11	Art. 40, 41
9	일-베트남	2009-10-01	Annex 3 Rule 2
10	일-인도	2011-08-01	Annex 3 Section 2, 3
11	일-몽골	2016-06-07	Art. 3.15.3.16

자료: WCO(2020); WTO, "RTAs in force, including accession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검색일자: 2022. 3. 23.

나. 인증절차 및 요건^{79), 80)}

- (대상) 인증수출자는 수출하는 물품이 각 EPA에 근거하는 원산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의 인증은 EPA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가령 일-스위스 FTA상의 인증수출자라도, 일-멕시코 FTA에 근거하는 인증수출자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증을

79) 일본 경제산업성, 「원산지 증명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24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7M60000400009>, 및 일본 「원산지 증명법」,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download/gensanchi/2016horitsu.pdf, 검색일자: 2022. 3. 22.

80) 일본 경제산업성, 「經濟連携協定 (EPA) に基づく認定輸出者自己証明制度申請・利用の手引き」, 2021. 12.,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download/gensanchi/approved_exporter_guidance.pdf, 검색일자: 2022. 3. 22.

받아야 함⁸¹⁾

-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해당 인증수출자는 생산자에게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라는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원산지 서약서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인증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일 3개월 이내 작성된 호적 초본 또는 이에 준하는 주민등록등본의 사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인증신청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와 임원의 성명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 인증수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류
 -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원산지증명법」,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동 법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류
 -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EPA 체약국 등을 도착지로 하는 수출에 관한 실적 및 계획을 기재한 서류

- (결격사유)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려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원산지 증명서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는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 그 집행을 끝마치거나 집행을 받은 후 그 효력이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법인의 경우 원산지 증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가운데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1) 일본 경제산업성, 「[Q2] 現在、日スイス協定での認定輸出者ですが、日メキシコ協定に関して改めて認定輸出者の認定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か。」,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approved.html#q-2, 검색일자: 2022. 3. 28.

- (인증요건) 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인증신청자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발급받을 것
 -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8회 이상, 인정신청을 하는 EPA 이외의 수급 실적을 포함하여 지정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수급실적이 있을 것
 - 인증신청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 간의 연락체제를 정비할 것
 - 경제산업장관
 - 인증신청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자⁸²⁾
 - 인증신청자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에 제2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 장부 기재, 변경 신고 등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적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법령업무 책임자'와 해당 책임자를 지휘하는 '총괄 책임자'를 배치할 것
 - 사무소별로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또는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과 증명서류 관리 및 해당 물품에 대한 사무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작성 업무 담당자' 등을 배치할 것
 - 총괄 책임자가 인증수출자 관련 업무 책임자와 자료 작성 및 증명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해당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내부 규칙에서 규정할 것⁸³⁾
 -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별로 경제산업 장관과의 연락체제를 정비할 것
 - 신청 관련 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무소별로, 해당 물품 생산자와의 연락 체제를 정비하고 있을 것

82) 해당 신청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인정신청자가 생산자가 아닌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83) 단, 해당 총괄책임자와 업무 책임자 업무 수행자 간의 연락체제가 정비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제외함

- (심사기간) 경제산업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

- (인증 통지) 경제산업장관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시 지체 없이 EPA별 인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서면으로 아래의 내용과 함께 인증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
 - 인증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서, 납품계약서, 기타 유사한 서류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 특정할 수 있도록 기술된 원산지 신고문언을 날인 또는 인쇄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서를 영어로 작성 및 발급할 것
 -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는 작성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1회의 수입에 한해 수리될 것

- (인증 유효기간)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함

- (인증 갱신) 인증수출자는 인증 효력이 없어지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인증 갱신 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
 - 갱신절차는 인증 신청절차가 준용되나,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적은 제외함
 - 경제산업성의 원산지 증명실은 신청서류 수리 후 10 영업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행함
 - 신청서류에 근거해 심사를 시행하나,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또는 대면으로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인증 갱신을 수리하는 경우, 최초 인증 시와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서류보관기간) 인증수출자는 EPA별로 서류보관기간이 상이한데, 일-멕시코, 일-페루 EP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일-스위스 EPA와 RCEP의 경우 3년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장부)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연월일, 해당 물품의 품명과 발급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있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사무소별로 각각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장부)는 다음과 같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연월일
 -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 성명
 - 원산지 증명서 해당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관세번호(HS code)
 - 원산지 증명서 해당 물품의 수입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용으로 제공한 구입계약서, 납품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등
 -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 서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산지 서약서를 교부받은 연월일, 원산지 서약서 교부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연락처 및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등

- (변경신고) 인증수출자는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경제산업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시 지체 없이 신고할 것
 -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EPA 체결국에 수출되는 물품의 품명의 변경(신규물품 추가 포함)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고할 것

- (생산자 통지의무) 인증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서약서를 교부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한 경우, 인증수출자는 즉시 해당 생산자에게 증명서 발급 취지와 작성 연월일을 통지해야 함
 - 또한 자율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 (경제산업장관 통지의무)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각 EPA의 서류보존기간 내 경제산업장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불통지 시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또한 원산지 증명서상 오류나 변경사항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경제산업장관에게 통지해야 함
 - 단, 경미한 사항으로 오기, 미스프린팅, 오타자 등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오류 등은 통지가 생략됨

- 인증수출자는 「등록면허세법」 제2조의2에 따라 등록면허세 9만엔이 과세됨
 - 납세는 인증일로부터 1개월이내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배치된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며, 영수증 원본을 등록면허세 납부계 이면에 첨부하여 경제산업성의 원산지 증명실로 제출해야 함
 - 또한 인증 갱신 신청의 수수료는 5천엔이며, 갱신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함

- (인증취소) 경제산업장관은 인증수출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법」의 결격조항에 해당한 경우
 -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변경의 신고 의무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장부)의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약서를 교부한 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또는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증명용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대상물품이 아님을 경제산업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경제산업장관으로부터의 증명서 작성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부정한 수단으로 인증(인증 갱신 포함)을 받은 경우
 - 기타 「원산지증명법」 또는 동법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인증수출자의 혜택⁸⁴⁾

- 인증수출자는 일본상공회의소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에 관련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승인 시 등록면허세가 9만엔 과세되고, 3년 후 갱신 시 5천엔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급비용 절감 효과가 커짐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증명서 40건에 대해 약 9만엔의 수수료가 발생함⁸⁵⁾
 - 또한 매월 2건의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3년간 약 16만엔의 수수료가 발생함⁸⁶⁾
- 또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심사 등을 위한 일정한 사무수속기간이 필요하나, 인증수출자는 필요한 타이밍에 신속히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이 가능해 증명서 발급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84) 일본 경제산업성, 『原産地証明法に基づく認定輸出者について』, 2021. 12.,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download/gensanchi/1904ninteipr2.pdf, 검색일자: 2022. 3. 22.

85) 1건에 동일한 1개의 원산지 물품을 게재할 경우 2,500엔×20회+2,050엔(21회차 이후)×20회=91,000엔

86) 1건에 동일한 1개의 원산지 물품을 게재할 경우 2,500엔×20회+2,050엔(21회차 이후)×52회=156,600엔

IV.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1. 국제비교

- 인증수출자 신청자 범위의 경우 EU가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됨
 - EU는 관세대리인의 경우 인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수출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자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관세청고시에서 관세사 등 대리인도 수출자가 위임할 경우에 인증신청 등 일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중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규정했으며, 일본은 수출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범위가 가장 좁음

- 인증요건의 경우 주요국 각각 상이한 기준을 보였으나,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체계보유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국 모두 이를 주요 요건으로 둠
 - 우리나라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보다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요건이 좀 더 간단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 요건에 인증 신청일 최근 2년간 원산지 관련 법규준수 여부⁸⁷⁾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양자 간 큰 차이임
 - 중국은 세관 고급인증기업, 즉 AEO 인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인증수출자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이 다른 두 주요국에 비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음
 - AEO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나, AEO 인증을 취득한

87) 원산지 관련 조사 거부, 서류보관의무 위반 및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 사실이 없는 자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다른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EU에 비해 인증수출자 취득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임

- EU 또한 AEO와 같은 국가인증보유자의 경우 인증수출자 심사가 고려됨을 언급함

- 일본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정기적인 발급 실적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및 법령을 관할하는 경제산업장관과 원산지 물품 생산자와의 연락 체제를 정비할 것 등을 규정해 다른 주요국들과 차별화된 인증요건을 보여줌

- 인증 유효기간의 경우 EU가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가장 긴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가 5년, 중국과 일본이 3년 순으로 이어짐

- 서류보관기간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정별로 각각 5년과 3년으로 규정하여 가장 길며 EU와 중국이 3년으로 동일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한-EU와 한-영 FTA는 5년, 한-중과 RCEP은 3년으로 규정됨
 - 일본 또한 일-멕시코와 일-페루 EPA는 5년, 일-스위스와 RCEP의 경우 3년으로 규정됨

- 인증수출자 제재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사후관리 시행 후 필요에 따라 또는 제재사유에 해당 시 인증 취소 및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은 별도의 사후관리규정이 없으며, 정보 변경 등에 따른 통지 의무를 규정하는 등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인증수출자 혜택의 경우 EU와 중국은 인증수출자가 규정된 모든 협정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이에 해당하며,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일본의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각 품목 또는 EPA에 한해 혜택이 주어짐

-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⁸⁸⁾ EU 및 일본과 같이 송장에 세관인증번호와 원산지 신고문언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세관의 인증수출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등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한 FTA들과 같이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세관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한 인증수출자의 온전한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주요국 인증수출자제도의 특이사항으로 중국의 정보교환과 적용 언어 규정 및 일본의 인증수출자 등록면허세 규정이 있음
 - 중국은 계약 상대국들과의 인증수출자 정보교환을 명시한 점과 이를 위해 모든 인증수출자 서류 관련 언어는 중문과 영문을 동시 적용해 작성할 것을 규정한 점임
 - 일본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최초 1회 「등록면허세법」에 따라 9만엔을 납부해야 함

88) 인증수출자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언 작성의무는 없으나 한-아세안,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및 한-싱가포르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더라도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음

〈표 IV-1〉 주요국의 인증수출자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EU	중국	일본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관세특례법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시행령(EU 2015/2447) - 범유럽-지중해 의정서 (EU 2013/94) - EU 인증수출자제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관리방법공포에 관한 해관총서령(제25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명법 - 원산지 증명법 시행령 - 원산지 증명법 시행규칙 - 원산지 증명법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 지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의 송장 또는 다른 상업 문서에 특정 원산지 신고문인을 포함해 특혜 원산지를 직접 인증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 물품 거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증하고 그에 따라 수출 또는 생산할 수 있으며 관련 FTA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장관의 인정을 받은 수출자가 체약 상대국에 수출 시 관세상 특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
신청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관세대리인(위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수출계약 당사자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또는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또는 품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충족물품 - 증명 가능한 원산지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상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상 -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원산지관리 전담자 운영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서류보관의무 위반, 원산지 증명서 부정 발급 사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 출고된 물품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자 - 원산지 상해 확인 시 필요한 모든 보증을 제공하는 자 - EU와 체결한 FTA 등에서 채택한 원산지규정 조건 충족자 - AEO와 같은 기타 국가인증보유자의 경우 인증수출자 심사가 고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고급인증기업(AEO) - FTA상 원산지 규정 필수 이행 - 원산지증명서류 관리제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동안 8회 이상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발급받았을 것 - 경제산업장관과 인증신청 관련 물품의 생산자와 연락 체계를 정비할 것 - 원산지 증명서 작성 관련 법령 업무 책임자, 증명서 작성 업무 담당자 및 이들을 지휘하는 총괄 책임자를 배치 - 총괄책임자의 감독 권한을 내부 규정화

〈표 IV-1〉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EU	중국	일본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전산처리 시스템 현황자료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확인서 ²⁾ - 국내제조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 서류 ³⁾	기업명과 주소 등 인증신청자 관련 정보 - HS 6단위, 수출예정국가, 투입 원재료 정보 등 물품과 생산 관련 정보 - 수출의 빈도와 수출예정물품 소재지 등 - 원산지거래 회계시스템, 서류 보관방법 등 원산지관리 정보	기업명과 주소 등 인증신청자 관련 정보 - HS 6단위 적용할 FTA 및 투입원재료 정보 등 물품 관련 정보 - 원산지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확인 하는 서면서 - 원산지관리제도 수립 서명서 - 원산지 증명서 날인 인장 -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비밀 유지요구서	개인	법인
신청 서류	-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전산처리 시스템 현황자료 - 원산지 확인서 ²⁾ - 국내제조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 서류 ³⁾	- 원산지 증명서 - 인증 받은 HS 6단위 물품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 기업명과 주소 등 인증신청자 관련 정보 - HS 6단위, 수출예정국가, 투입 원재료 정보 등 물품과 생산 관련 정보 - 수출의 빈도와 수출예정물품 소재지 등 - 원산지거래 회계시스템, 서류 보관방법 등 원산지관리 정보	- 기업명과 주소 등 인증신청자 관련 정보 - HS 6단위 적용할 FTA 및 투입원재료 정보 등 물품 관련 정보 - 원산지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확인 하는 서면서 - 원산지관리제도 수립 서명서 - 원산지 증명서 날인 인장 -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비밀 유지요구서	- 3개월 이내 작성된 호적 등 증명서류와 인감증명서 - 인증수출자 결격사유 미해당 서약서류 - 인증수출자 규정 법령 준수 서약서 - 계약국 대상 수출실적 및 계획 서류	- 등기증명서와 입원 정보 서류 등
혜택	- 모든 협정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 인증 받은 HS 6단위 물품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 모든 협정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 송장 신고서에 서명 생략	- 모든 협정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 인증수출자 관리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 인증받은 협정별 HS code (관세번호) 물품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심사 기간	30일(보정기간 포함)	120일	30일	30일	20일	
유효 기간	5년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	3년	3년	3년	
서류 보관 기간	5년 또는 3년 ⁴⁾	3년	3년	3년	5년 또는 3년 ⁵⁾	
사후 관리	- 유효기간 2년 6개월 이내 자율 점검 및 필요시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세관 현지확인	- 유효기간 중 세관 서면 또는 현지감사	- 원산지 증명서와 증명서류 관련 세관 감사	- 원산지 증명서와 증명서류 관련 세관 감사	-	
제재	- 시정조치 - 인증취소(청문)	- 시정조치 - 벌금 또는 과태료 등 - 인증취소	- 인증취소 - 재인증 신청 제재(2년) - 벌금(1만원안 이하)	- 인증취소 - 재인증 신청 제재(2년) - 벌금(1만원안 이하)	- 인증취소 - 벌금(30만엔 이하)	

〈표 IV-1〉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EU	중국	일본
발급 방법	-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인 작성	-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인 작성	- 세관의 인증수출자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인 작성
정보 교환	-	-	- 계약 상대국과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	-
적용 언어	-	-	- 증문 및 영문	-
수수료	-	-	-	- 등록면허세 최초 9만엔 (매 갱신 시마다 5천엔)

주: 1)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2)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3)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4) 한-EU와 한-영의 경우 5년, 한-중과 RCEP의 경우 3년임

5) 일-멕시코와 일-페루의 경우 5년, 일-스위스와 RCEP의 경우 3년임

자료: 본문 내용을 취합하여 저자 작성

2. 문제제기

가. 다양한 FTA와 통일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방식⁸⁹⁾

-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18개 FTA를 살펴보면, 한-EU 및 한-터키 FTA와 같이 협정 간 유사성이 높은 협정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협정들이 개별적으로 별개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FTA 활용의 복잡성이 큼
 - FTA 체결 역사가 오래되어 고유의 원산지규정 모델을 지니고 있는 유럽권이나 미주권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협상 대상국 요구에 따라 개별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해 온 결과 FTA 활용의 복잡성이 심화됨

- 우리나라가 체결한 18개의 FTA의 원산지 증명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는 기관발급을 채택, 유럽권과 미주권 및 해당 지역과 무역 관련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자율발급을 채택한 것을 알 수 있음
 - 기관발급을 채택한 FTA는 총 5개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및 한-베트남 FTA가 있음
 - 자율발급을 채택한 FTA는 총 11개로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FTA가 있음
 -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혼합형식의 FTA는 총 2개로 한-호주⁹⁰⁾와 RCEP⁹¹⁾가 있음

89) 진병진, 「한국형 FTA원산지모델 도입에 관한 연구: 원산지 증명과 관세협력을 중심으로」, 『무역상무 연구』, 제82권, 2019. 5., pp. 1~20.

90) 호주 수출자에 한해 기관발급 선택 가능

91) 2022년 현재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 선택이 가능하며 국가별 10년 혹은 20년 이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기반 자율발급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표 IV-2〉 우리나라 체결 FTA의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FTA	발급방식	발급 주체	규정
1	한-칠레	자율	수출자	제5.2조, 통일규칙 제3조
2	한-싱가포르	기관	기관	제5.1조, 제5.2조
3	한-EFTA	자율	수출자 생산자	제15조, 제16조
4	한-ASEAN	기관	기관	부속서 3 제15조, 부록 1
5	한-인도	기관	기관	제4.2조
6	한-EU	자율	수출자 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7	한-페루	자율	수출자 생산자	제4.1조, 제4.3조, 제4.13조, 부속서 4A 제1조, 제2조, 제4조
8	한-미국	자율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제6.15조
9	한-터키	자율	수출자	제16조, 제17조, 제18조
10	한-콜롬비아	자율	수출자 생산자	제3.18조
11	한-중미	자율	수출자 생산자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12	한-호주	혼합	기관 수출자 생산자	제 3.15조, 제3.16조
13	한-캐나다	자율	수출자 생산자	제2.1조, 제4.1조, 통일규칙에 대한 각서
14	한-뉴질랜드	자율	수출자 생산자	제3.19조, 부속서3-다 원산지규정 운영절차에 대한 이행 약정
15	한-베트남	기관	기관	제3.14조, 제3.15조
16	한-중국	기관	기관	제3.15조, 제3.16조
17	한-영국	자율	수출자 ¹⁾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부 원산지 증명
18	RCEP	혼합	기관 인증수출자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주: 1) 6천유로 이상 시 인증수출자

자료: WCO(2018); 진병진(2019); 관세청, 「원산지 증명서 개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검색일자: 2022. 3. 17.

- 유럽권과 미주권 국가들과 같이 이미 고유의 모델을 설정해 그들이 체결하는 협정에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협정들이 체결되고 발효될수록 FTA 간 활용의 차별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
 - 상대국과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유독 원산지규정은 EU와의 협정에서는 PANEURO 모델이, 미국과의 협정에서는 NAFTA 모델이 적용되는 등 상대국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협상의 주도권을 갖지 못함이 원인임
 - 우리나라는 FTA 추진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 상대국 관세철폐 범위, 개방 시기 및 민간품목 보호 등의 요소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부수적 요소로 인식해 원산지규정 자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FTA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 산업이나 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규정의 충분한 정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협상 시 상대국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

- 이렇듯 우리나라는 FTA별로 원산지 증명방식의 다양성과 복잡성 심화된 상태이나, 2022년 2월 RCEP의 발효로 기관발급을 추구하던 일부 국가들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용함에 따라 총 58개국 중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FTA 체결국은 40개국으로 전체의 67%가 넘게 됨
 - 완전수출자기반 또는 수입자기반 원산지 증명방식을 채택한 17개국⁹²⁾과 RCEP에 해당되지 않는 인도를 제외하면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국가는 40개임

- 따라서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찾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취득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92) 칠레,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중미(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나. RCEP 발효와 인증수출자제도

- 2022년 2월, RCEP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세안, 중국, 싱가포르 및 베트남에 수출할 때에 인증수출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기존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개별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RCEP으로 통합된다면 앞으로 기관발급만 허용하는 FTA는 한-인도뿐임

- RCEP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완전수출자 기반 원산지 증명서는 국가별 10년 혹은 20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함
 - 수입자기반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단, 일본의 경우 RCEP 발효 즉시 수입자기반제도를 도입함

- 인증수출자제도가 한-EU와 한-영 FTA에 따라 6천유로 이상 수출할 경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제도에서 이제는 RCEP에 따라 기관발급보다 좀 더 용이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선택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의 원산지 발급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자율발급을 지향해야 할 것이나,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⁹³⁾
 - 단, 국가에 따라 자율발급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상대국의 원산지관리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제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임

93) 진병진(2019), p. 13.

3. 개선방안

가. 인증수출자 신청요건 등 개선

- 우리나라의 인증수출자 규정은 한-EU FTA를 중심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양자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중 ‘빈번한 수출’ 요건과 EU의 신청자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넓은 것을 제외하고는 양자 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가장 최근에 제정된 중국의 「인증수출자관리방법에 대한 해관총서령」은 RCEP 활용에 대비한 규정이므로 우리나라와 EU에 없는 신설된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AEO 요건과의 연계

- 중국은 AEO 업체를 인증수출자 신청범위에 포함시키면서 AEO 요건과 인증수출자 요건을 연계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AEO 요건은 크게 ① 내부통제시스템, ② 재무건전성, ③ 법규준수와 적절한 기록 및 ④ 보안과 안전 기준으로 이뤄지며 우리나라 AEO 요건과 큰 골격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임⁹⁴⁾
 - 내부통제시스템의 경우 세관활동에 대한 시스템, 수출입 거래선 활동, 내부감사 및 IT 시스템 등의 통제 수준을 평가
 - 재무건전성의 경우 업체의 회계정보, 재무상환능력, 수익성(이윤율) 및 세금지불 능력 등을 평가
 - 법규준수와 적절한 기록의 경우 직원들의 법과 규정의 준수도, 수출입의 규칙성, 세관요구사항의 충족 및 외부 신용상태를 평가

94) 강성훈·김미영·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pp. 79~80.

- 보안 및 안전 기준의 경우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등 물리적 형태에 대한 안전성 충족 기준에 대해 평가
- 우리나라 AEO 공인 기준을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⁹⁵⁾
 - 법규준수의 경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내부통제시스템의 경우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 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평가
 - 재무건전성의 경우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 상황(조세 체납 여부 또는 신용등급 등)인지를 평가
 - 안전관리의 경우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 기술, 교육 및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 여부를 평가
- 따라서 우리나라도 AEO 공인업체의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요건의 일부에 대한 상쇄가 가능하다면, AEO 업체에 한해 인증수출자 신청요건을 완화해 인증수출자 취득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EU 또한 AEO와 같은 국가인증보유자의 경우 인증수출자 심사 시 고려함

2) 정보교환규정 신설

- 중국은 향후 RCEP 협정국 간 인증수출자 정보 공유를 위해 체약 상대국과의 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했고, 이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 신청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중문과 영문을 모두 사용해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등 규정을 명문화함
-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체약 상대국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인증수출자 번호의 공개 및 공개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5) 상동, p. 16.

나.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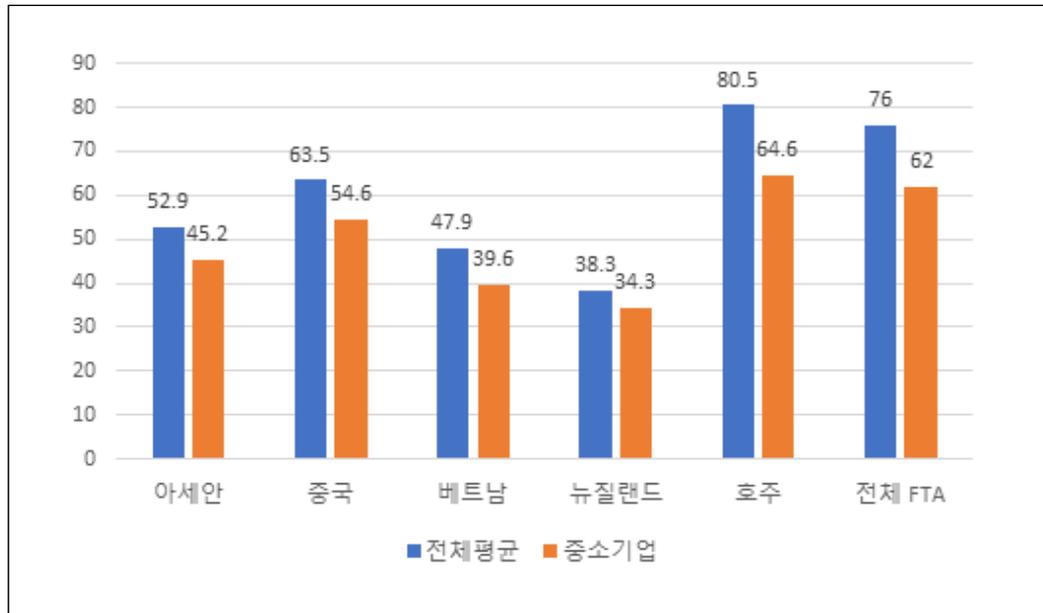
1)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확대 및 지자체와의 협업

- 정부는 RCEP 지역에 대한 FTA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대폭 늘리고 특히 수출활용률이 낮은 경기도와 같은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지원 항목의 경우 업체 스스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 내 원산지 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관세사 또는 원산지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내 전담조직은 양질의 FTA 보수교육을 수료하는 등 업체 자체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함
 - 또한 공익관세사 제도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임
 - 관세지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외지에 공익관세사를 파견 보내려면 국선번호인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양질의 컨설팅과 참여 의욕 향상을 위해 관철되어야 할 부분임

- 2021년 6월 기준 관세청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현황을 도표로 요약한 [그림 IV-1]을 살펴보면, RCEP 대상 국가의 FTA 수출활용률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은 더욱 저조함
 - FTA 수출활용률이란, 수출하는 특혜 대상 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임

[그림 IV-1] RCEP 대상 국가 FTA 수출활용률

(단위: %)



자료: 김석오, 「RCEP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신대응전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22. 1. 12.

- RCEP 지역에 대한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하지만 정부의 FTA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활동은 점점 축소되는 상황임
 - FTA 체결 확산이 2010년 중반에 고점을 기록하고 점점 하락함에 따라 FTA 지원에 대한 열의도 점점 줄어든 것으로 보임

- FTA 활용지원 예산은 2017년 약 43억원에서 2020년 약 32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중소기업의 FTA 지원활동 또한 2017년 667개 업체에서 2020년 449개 업체로 감소함
 - 기업지원 활동이란, FTA 활용 관련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특혜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및 관세청의 무료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가입 등의 성과로 나타남

[그림 Ⅳ-2] FTA 예산 및 중소기업 지원활동

(단위: 백만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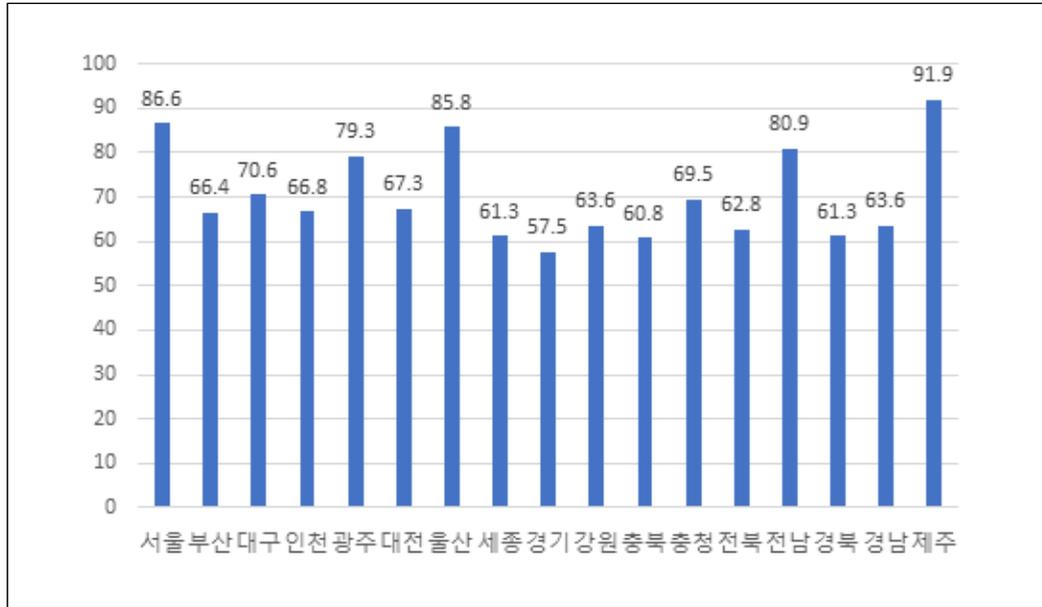


자료: 김석오, 「RCEP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신대응전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22. 1. 12.

- 지역별 소재한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주로 위치한 서울과 울산 등의 수출활용률은 약 85% 정도로 높은 편이나, 경기도는 수출기업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 57% 정도로 수출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를 통해 지방의 소외지역은 FTA 지원 행정력이 미치지 어렵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IV-3] 지역별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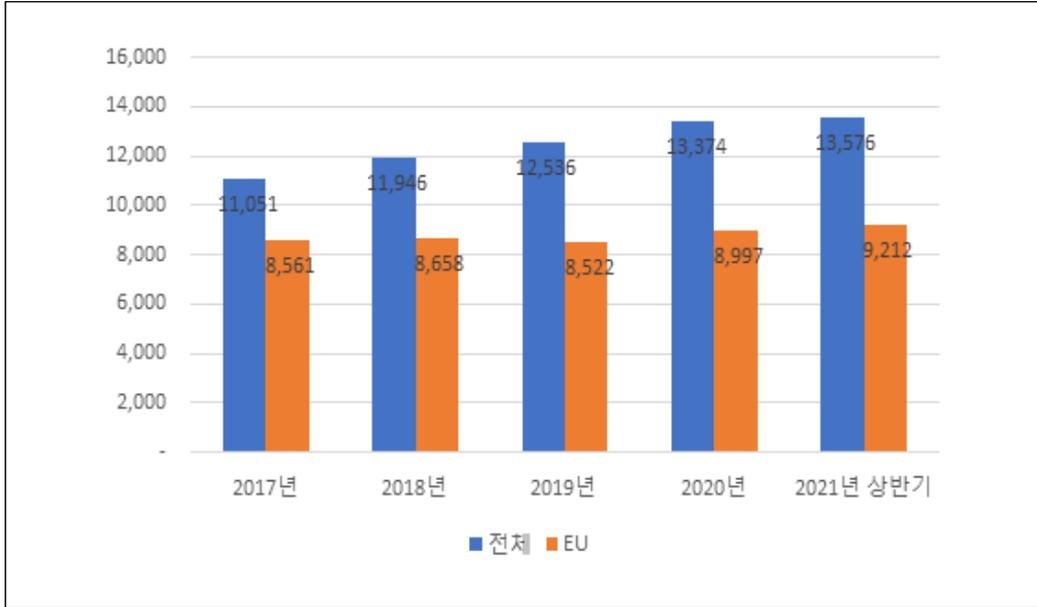
자료: 김석오, 「RCEP가 관세행정 에 미치는 영향과 신대응 전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22. 1. 12.

2) RCEP 지역 중심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확대

- 인증수출자 취득률은 매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6월 기준 총 수출기업의 약 16%에 불과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해진 RCEP에서 더 많은 수출자가 쉽게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그림 IV-4] 연도별 인증수출자 누적취득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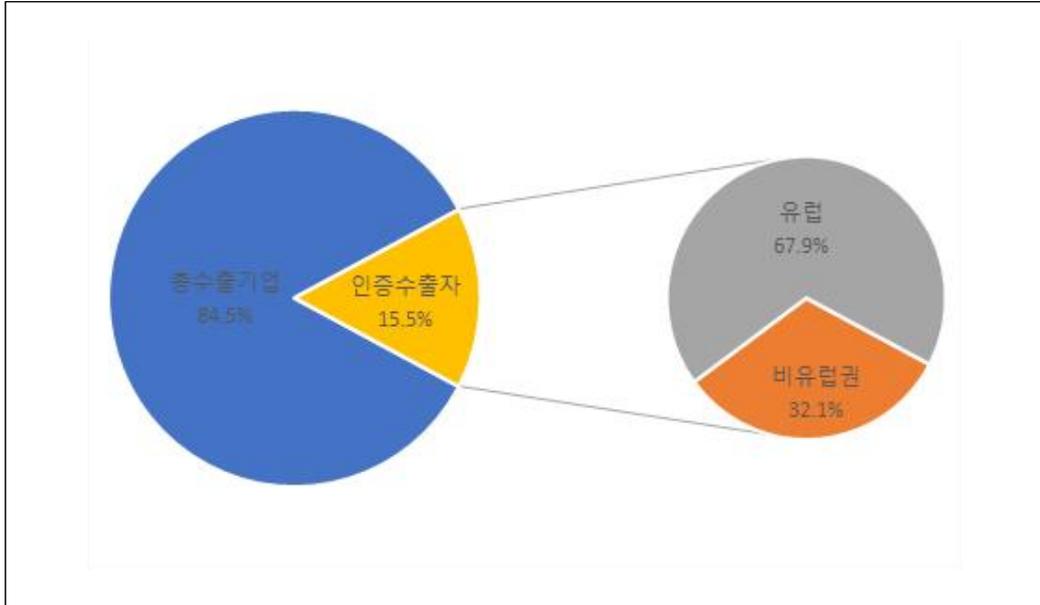


자료: 김석오, 「RCEP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신대응전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22. 1. 12.

- 특히,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 중 비유럽권에 대한 인증수출자 비중은 32.1%에 불과하므로, RCEP 활용을 위해 RCEP 지역을 초점으로 타기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EU 경우 6천유로 초과 수출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인 점을 감안하면, 비유럽권의 인증수출자 취득 유인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IV-5] 총 수출기업 및 특혜지역별 인증수출자 비중

(단위: %)



자료: 김석오, 「RCEP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신대응전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22. 1. 12.

참고문헌

<국문자료 및 보고서>

- 강성훈·김미영·김다람,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김석오, 『RCEP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신대응전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22. 1. 12.
- 김중근·정은경, 「FTA 원산지증명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관세사회, 2021. 5., pp. 103~126.
- 안태건·김정환,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9., pp. 291~312.
- 정재호·신상화,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진병진·김세라·황정훈, 『주요 FTA 체결국 등의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12.
- 진병진, 「한국형 FTA원산지모델 도입에 관한 연구: 원산지증명과 관세협력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2권, 한국무역상무협회, 2019. 5., pp. 1~20.
- _____,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0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9. 12., pp. 191~208.

<영문자료 및 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2020.

WCO, “Guidelines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18.6

_____, “Comparative Study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20. 6.

일본 경제산업성, 『經濟連携協定 (EPA) に基づく認定輸出者自己証明制度申請・利用の手引き』, 2021. 12.

_____, 『原産地証明法に基づく認定輸出者について』, 2021. 12.

〈국내외 웹사이트〉

관세청, www.customs.go.kr

차이나포커스, 「중국의 3증합1(三證合一) 행정변경업무」, 2017. 6. 1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8135429&memberNo=36206011>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

EUR-Lex, <https://eur-lex.europa.eu/>

WCO, <http://www.wcoomd.org/>

WTO, <https://www.wto.org>

중국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일본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

관세연구 21-06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을 통한 FTA 활용 연구
- 인증수출자제도를 중심으로

발 행 2021년 12월 31일

저 자 강동익 · 김다람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삼일기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130-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